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0. 28 선고 2020나673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0. 28 선고 2020나67344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9. 25 선고 2019가단273869 판결

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유한회사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갑, 윤지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보현

변론종결 2021. 8. 12.

판결선고 2021. 10. 28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9가단273869 판결

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 C와 피고 사이에 2019. 5. 1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6. 25. 접수 제1115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또는 항변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추가판단

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경위를 고려하면, C는 사실상 상속포기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대하여 사실상 C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이정민, 판사 김정현, 판사 박재성

별지